[별지 제 1호 서식]

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

처리기간
10일

소유자	①성 명		②생년월일	
	※ 법인일 경우 '대표자' 정보 필수 기재(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) □ 성명 : □ 생년월일 : 년 월 일 □ 휴대전화 :			
	③주 소			
	④휴대전화(차주 본인)		⑤FAX	
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	⑥차량번호		⑦차대번호	
	⑧ □ 자동차 □ 건설기계	□ 연식( )년 □ 배기량( )CC		
		정원(승합)	명	규격(건설기계 해당) ( )
		중량(화물)	□적재중량( )톤 □총중량( )톤	
	⑨차명(건설기계명) 및 형식	/	⑩ 용도	
	⑪등록일자(차령)	년 월 일	⑫ 사용 연료	
운행 상태	⑬정기·종합 검사 일자		⑭검사 기관	
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	□ 자동차	□ 해당 □ 미해당 ※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(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)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		
선폐차(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) 여부 확인 □ 해당 □ 미해당	□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※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에는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수령 할 수 있음 ※ 선폐차 신청자는 접수확인증(별지6호) 발급 시 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시 까지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함			

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참고사항 :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(별지2호)까지 사용본거지 또는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,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시장(지사) 또는 절차대행자 귀하

	신청인 제출서류		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	수 수 료
구비서류	개인	1.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. 2.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.	1.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.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	없 음
	법인	1. 사업자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사본 1부. 2.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		
	해당자	1.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. 2.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. (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) 3. 차량 사양 증빙서류(제작사 또는 보험회사)		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'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